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앤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8.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광주시 1년 미만 거주.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정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현	<u></u>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	8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8.02.(금)	2024.08.12.(월)	2024.08.13.(화)	2024.08.14.(수)	2024.08.21.(수)	2024.08.23.(금)~ 2024.08.25.(일)	2024.09.02.(월)~ 2024.09.04.(수)

. 공통 유의 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 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51-063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 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원되어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	1금 충족	1순위(12개	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_	-	필요	_	_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_	적용	ı	적용	_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인조부·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라.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트腊고그/이비고그 그 날 어이
OLHLIZIZI	사이번 단원된 시됩니다!! #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gonjiam-station)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07.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 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8.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8.12.(월)	2024.08.13.(화) 2024.08.14.(수)		2024.08.21.(수)	2024.08.23.(금)~ 2024.08.25.(일)	2024.09.02.(월)~ 2024.09.04.(수)	
н. н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PC·모바일) 청약홈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		
방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	은행		(주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관련 안내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1)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4)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전매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5)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제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기납부한 금액이 총 분양가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 이 전매를 목적으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매수인은 총 공급금액의 10% 이상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주택과 - **35036호(2024.07.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22층, 10개동 총 635세대

[특별공급 318세대(기관추천 63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114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5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T EU		TOUR		주택공급면적(㎡)		기타	711.01	/II CII HH	*27			특별공급	에 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세대별 총공급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생생다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ᇻᆝᄱᇚᆺᆝ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8237A	84A	84.8237	26.4827	111.3064	58.8564	170.1628	49.9579	448	45	45	81	14	41	226	222	26
	02	084.9544B	84B	84.9544	27.6273	112.5817	58.9471	171.5288	50.0349	179	18	18	33	6	17	92	87	11
2024000365	03	139.6980A	139A	139.6980	48.6316	188.3296	96.9310	285.2606	82.2768	4	-	-	-	-	-	-	4	-
	04	139.7239B	139B	139.7239	49.0757	188.7996	96.9490	285.7486	82.2920	4	-	_	-	-	-	-	4	-
		합 계									63	63	114	20	58	318	317	37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계약금	(10%)			중도금	ł(60%)			잔금	
주택형	공급	층	세		쑹달	l금액		1회자	2회차	1회자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자	(30%)	
(약식표기)	세대수	구분	구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Ä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2025.03.28	2025.07.28	2025.11.28	2026.04.28	2026.08.28	2026.12.28	입주지정일
		1층	1	115,800,000	463,200,000	-	579,000,000	10,000,000	4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2층	26	117,000,000	468,000,000	-	585,000,000	10,000,000	4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0.44	4.40	3층	26	118,200,000	472,800,000	-	591,000,000	10,000,000	4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77,300,000	
84A	448	4층	26	119,400,000	477,600,000	-	597,000,000	10,000,000	4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79,100,000	
		5~9층	130	120,600,000	482,400,000	-	603,000,000	10,000,000	5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10층 이상	239	121,800,000	487,200,000	-	609,000,000	10,000,000	5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82,700,000	
		1층	1	115,000,000	460,000,000	-	575,000,000	10,000,000	4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172,500,000	
		2층	11	116,200,000	464,800,000	-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0.45	170	3층	11	117,400,000	469,600,000	-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84B	179	4층	11	118,600,000	474,400,000	-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5~9층	55	119,800,000	479,200,000	-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0층 이상	90	121,000,000	484,000,000	-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39A	4	10층 이상	4	266,296,000	1,065,185,000	106,519,000	1,438,000,000	10,000,000	13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431,400,000	
139B	4	10층 이상	4	266,296,000	1,065,185,000	106,519,000	1,438,000,000	10,000,000	13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143,800,000	431,40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084.8237A	084.9544B	139.6980A	139.7239B
약식표기	84A	84B	139A	139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유상옵션 선택품목비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금액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공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연체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2024년 05월 기준 4.49%)와 가산금리 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 이자율에 관한 규정)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중도금 및 잔금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과정,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면적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보증사항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및 계약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외관 색채,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 _,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신청대상자	신 청 일 자	신 청 방 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8.12.(월) (청약 Home 인터넷 : 09: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또는 스마트폰 앱 견본주택 방문 청약 노약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헬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합계
	국가위	유공자	7	2	9
	장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3	9
	10년 이상 경	장기복무군인	7	2	9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6	3	9
	장애인	서울특별시	6	3	9
		인천광역시	6	3	9
	중소기업 근로자		7	2	9
	경기도 거주자(50%)		23	9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2	9	31
	 신혼부부 특별공급		81	33	1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6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41	17	58
	 합 계		226	92	31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구 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 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지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공급 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2	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명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청약자격 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광주시 및 경기도)					
	구 분 전용면적 85㎡ 이청		당왕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광주시 및 경기도) 200만원					
청약자격 요건		하 300만원	·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광주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경	하 300만원 하 600만원	가공역시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광주시 및 경기도) 2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3세대

구 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관 련 법 규	해 당 기 관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무단기단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3세대

구	분	내용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침 선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50%(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 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②배점										
	mzəc	를 III 되	배점기준		шп						
	배점항목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WCII 7 44/0)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비고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 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	본이나 가족된	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ਰ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P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l)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	본이나 주민등	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14세대

구 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8.0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C 7 H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 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의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경우는 제 * 「농지법	외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토지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			
			- 건축물가액	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	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0세대

구 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현	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청자격	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한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기	지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	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	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미만 거주	자 및 수도권(경기	미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	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	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로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①무주택기간	3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l l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
	t t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
	İ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
		7년 이상 ~ 8년 미만	16		
		O 명	5	4명	2
0		1명	10	5명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③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 준으로 함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l간 점수를 합산하지 Q	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8세대

구	분	내 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 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신청	TLOS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신청	사극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רכו או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17 -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8.0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7 H	111.0	소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 분	금 액		내 용						
			• 건축물가액은 해	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	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역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3억3,100만원 이하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100마워			- T.O 2.1.2.2.7.5.7.7.1.1.1.2.1.1.2.1.1.1.1.1.1.1.1.1.1.1				
(건물+토지)			단, 아래 경우는 - 「농지법」제23	제외	E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				
		토지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3 일한 주소인 경		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 공부상 도로, =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
			• 건축물가액에 토	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광주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췀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 84B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39A / 139B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주민등록표등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청약자 본인	(0) 174	35	2명	15	6명 이상	35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세외)	제외)		3명	20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본인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
③입주자저축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만	1	2년 이상	3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청약홈)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보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물 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한) 및 해외에 채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제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미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 청 일 시	신 청 방 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8.1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헬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1순위	2024.08.13.(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4.08.14.(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흠	- 조회방법 : 청약홍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21.(수) ~ 2024.08.30(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8.2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 약 체 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4.08.21.(수) • 확인방법	• 일시 - 2024.09.02(월)~2024.09.04.(수)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www.applyhome.co.kr</u>)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장소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홈페이지(http://www.hillstate-hec.co.kr/s/gonjiam-station)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8.21.(수) ~ 2024.08.30.(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인터넷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4.08.2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 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 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4.08.23.(금)~2024.08.25.(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포함)	(10:00~16:00)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서류(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현장 접수 시 포함)

	서	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전자여권 제외)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양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공 통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시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서 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근무자			레이템을 제명 주비사를	청약자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단신부임)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07/1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청약자 및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0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170H 71-11117FH	배우자 및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0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0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훈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다자녀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가구			이야하게즈며 니	배우자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kT D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MAIC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기독관계등양제(정제)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혼부부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01TL CC L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
2211			임신신단서 또는 물산등병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u>-</u>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노부모 부양자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7/11/27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득세미축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포크세티푸 비증시ㅠ	70 7 A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청약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소득증빙 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MIGIZ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세네컨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0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511 1 74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w = c		· ㅁㄷ 데미시됩피/베이지 미 지게?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0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위임장	생각자	
대리인				71.01.TI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신청 시		0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추가 사항			NH X	FILATOI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피해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제출서류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0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0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두역적 통보를			_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i	해당주택	
받은자		0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	루(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UCITIT!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	
		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지네트 전기기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발급이 않되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저녁도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세무서
	WOL 511 # T		- 세무서/해당직장
	법인 대표자	• 전년도 재무제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해당직장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007AICH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사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34 Tell 111-1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세무서
		•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 41 - 44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 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서 류 구 분	확 인 자 격	증빙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원본)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서 류 구 분	해 당 자 격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부동산 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www.iros.go.kr)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자산기준	부동산 소유자	① 해당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입증서류		② 재산세 납부내역	
		③ 해당 보유 부동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② 위텍스
		※ 토지/주택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홈텍스 / 시가표준액 : 위텍스	③ 해당 사이트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서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전자여권 제외)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공 통	0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서 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레이그디지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추가서류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 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기점제, 예비입주자)		0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지계조소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기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circ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포함)로	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대리인 신청 시		\circ	인감증명서	청약자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기 전경 시 기 추가 사항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0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0		체다. 자란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통보를	- 기 이 이 이 구들에 대한 고경지표 그 에 경구를	해당주택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받은자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기준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_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9. 계약 체결 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 분	계 약 기 간	계 약 장 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9.02.(월)~2024.09.04.(수) (10:00~16:00)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당첨자는 당첨 동ㆍ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 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1/07010÷1	491001-01-360311		
분양대금 관리계좌(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신영부동산신탁(주)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KB국민은행 491001-01-360311, 신영부동산신탁(주)]를 통해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준	유 의 사 항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본인 계약시		본인	•「인지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인지세 납부증명서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함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6억 초과 주택의무 제출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대리 계약시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내다 계약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 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 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 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위탁자 및 시공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 등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예정 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2개월 이전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작은도서관(북카페), 미화원 등 휴게실,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계약

1) 발코니 확장 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고 티 원	HLDI I SLTL DOU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u ¬
주 택 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시	2025,03.28.	입주지정일	비고
84A	22,000,000	2,200,000	2,200,000	17,600,000	
84B	22,000,000	2,200,000	2,200,000	17,600,000	
139A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139B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 2) 발코니 확장 계약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 제공품목 제한 적용) 가 적용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 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상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 체결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 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확장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에는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 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총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실제 거주생활에 불편함과 배관 노출 등 미관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발코니 확장 세대일 경우, 인접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 벽체, 천장, 바닥에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단차가 생기거나 실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 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 계약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	선 택 안	설치 대수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5.03.28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1안	3	거실 + 주방 + 침실1	6,454,000	645,400	645,400	5,163,200	
044 045	2안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9,365,000	936,500	936,500	7,492,000	LOTITI
84A, 84B	3안	3	거실 + 주방 + 침실1 (공기청정기능 추가)	6,950,000	695,000	695,000	5,560,000	LG전자
	4안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공기청정기능 추가)	9,785,000	978,500	978,500	7,828,000	
	1안	3	거실 + 주방 + 침실1	7,448,000	744,800	744,800	5,958,400	
	2안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3,271,000	1,327,100	1,327,100	10,616,800	
139A, 139B	3안	3	거실 + 주방 + 침실1 (공기청정기능 추가)	7,944,000	794,400	794,400	6,355,200	LG전자
	4안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공기청정기능 추가)	14,430,000	1,443,000	1,443,000	11,544,000	

2) 무상 선택품목(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한함)

주 택 형	구분	선 택 안	내용	비고
044	원제/조바 페드기 등학	1안	[확장 기본] 현관/주방 팬트리 개별 사용	
84A	현관/주방 팬트리 통합	2안	[무상 옵션] 현관/주방 팬트리 통합	
	원제/보다 페드게 통하	1안	[확장 기본] 현관/복도 팬트리 개별 사용	바그!!!!!!!!!!!!!!!!!!!
0.40	현관/복도 팬트리 통합	2안	[무상 옵션] 현관/복도 팬트리 통합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불가
84B	카시4/드레시크 트란	1안	[확장 기본] 기본형 드레스룸 + 좌식 파우더장	
	침실1/드레스룸 통합	2안	[무상 옵션] 침실1/드레스룸 통합	

3) 유상 선택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T EL B	택 형 품목 내용		¬ 04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u ¬	
주 택 형	6	чь		금 액	계약시	2025.03.28	입주지정일	비고
	27.50		3SD 현관 중문(수동) + 에어 브러쉬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현관 중문		3SD 현관 중문(자동)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욕실 고급화	공용욕실	타일, 욕조 측면/뒷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세면대/욕조수전, 악세서리 특화	4,063,000	4,063,000 406,300	406,300	3,250,400	
	부부욕실 타일, 뒷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세면대/샤워수전, 악세서리 특화	,,,,,,,,,,,,,,,,,,,,,,,,,,,,,,,,,,,,,,,	,		, ,			
	바닥 마감 고급화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3,050,000	305,000	305,000	2,440,000	
84A	벽 마감 고급화	거실 아트윌	거실 아트월/복도 유럽산 대형 세라믹 타일 + 복도 벽 마감 특화		783,000	783,000	6,264,000	
	주방 고급화		(성판 세라믹 타일 + 주방 가구 특화(유리플랩장 외 디자인 특화 + 상/하부장 조명 외) + 주방 2물천장/간접조명/라인조명 + 수전, 악세서리 특화 + 전해수 살균 수전 + 독립형 후드		978,700	978,700	7,829,600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불가
	주방 장식장, 현관/주방 통합 팬트리 시스템 가구 고급화	(* 1	절균 수선 + 독립형 후드 주방 장식장 + 현관/주방 통합 팬트리 시스템가구 고급화 (※ 현관/주방 팬트리 통합 선택 시 선택 가능) (※ 주방 장식장 설치로 인한 팬트리 깊이 축소)		380,800	380,800	3,046,400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등	빌트인 냉정	항고 + 냉동고 + 김	치냉장고 + 수납 시스템 가구	6,435,000	643,500	643,500	5,148,000	
	드레스룸 고급화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 도어 (※ 드레스룸 + 파우더 통합, 부부욕실 도어 위치 변경)			342,900	342,900	2,743,2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삼성)			98,000	98,000	784,000	
	빌트인 스마트 제습기	빌트인 스미	·트 제습기(힘펠)	1개소	1,404,000	140,400	140,400	1,123,200	
	조명 고급화			장) + 거실/주방/침실 !, Smart lot 스위치 제공)	4,146,000	414,600	414,600	3,316,800	
	3구 인덕션		3구 인덕	덕션(LG)	1,195,000	119,500	119,500	956,000	
	오븐		기능성 오	2븐(삼성)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미니 월패드		현관 미니 월	패드(현대HT)	508,000	50,800	50,800	406,400	
	스마트 욕실 환풍기	스마트 욕	실 환풍기(힘펠)	2개소	773,000	77,300	77,300	618,400	
			3SD 현관 중문(수	동) + 에어 브러쉬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현관 중문		3SD 현관	중문(자동)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OA 778	공용욕실		면/뒷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조수전, 악세서리 특화	4,059,000	405,900	405,900	3,247,200	
	욕실 고급화	부부욕실		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워수전, 악세서리 특화	4,030,000	403,300	403,300	3,241,200	
	바닥 마감 고급화		거실/주방/복	도 바닥 타일	2,761,000	276,100	276,100	2,208,800	
	벽 마감 고급화	거실 아트월	거실 아트월/복도 유럽산 대형 세라믹 타일 + 복도 벽 마감 특화			1,070,400	1,070,400	8,563,200	
	주방 고급화	특화 +	병/상판 세라믹 타일 + 주방 가구 특화(유리플랩장 외 디자인 특화 + 상/하부장 조명 외) + 주방 라인조명 + 수전, 악세서리 특화 + 전해수 살균 수전 + 독립형 후드			719,100	719,100	5,752,800	
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등	빌트인 냉정	항고 + 냉동고 + 김	치냉장고 + 수납 시스템 가구	6,363,000	636,300	636,300	5,090,400	HLDII
040	발코니 팬트리		발코니 팬트리 도	어 + 시스템 가구	1,046,000	104,600	104,600	836,800	발코니 비확장형
	드레스룸 고급화	· -	더블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입식 파우더장 (※ 침실1/드레스룸 통합 미선택 시 선택 가능) (※ 부부욕실 도어 위치 변경)			500,000	500,000	4,000,000	선택 불가
	식기세척기		식기세척	기(삼성)	980,000	98,000	98,000	784,000	
	빌트인 스마트 제습기	빌트인 스미	·트 제습기(힘펠)	1개소	1,404,000	140,400	140,400	1,123,200	
	조명 고급화			장) + 거실/주방/침실 !, Smart lot 스위치 제공)	3,945,000	394,500	394,500	3,156,000	
	3구 인덕션		3구 인덕션(LG)		1,195,000	119,500	119,500	956,000	
	오븐		기능성 오븐(삼성)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미니 월패드		현관 미니 월패드(현대HT)		508,000	50,800	50,800	406,400	
	스마트 욕실 환풍기	스마트 욕	실 환풍기(힘펠)	2개소	773,000	77,300	77,300	618,400	
	=		3SD 현관 중문(수	동) + 에어 브러쉬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현관 중문		3SD 현관	중문(자동)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39A	욕실 고급화	부부욕실		변/뒷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전/샤워수전, 악세서리 특화	6,979,000	697,900	697,900	5,583,200	

	1							
			(※ 욕실 고급화 선택 시 부부욕실 입구 타일 연장 시공)	바닥				
		공용욕실, 욕실	타일, 뒷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세면대/샤워수전, 악세서리 특화					
	바닥 마감 고급화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4,009,000	400,900	400,900	3,207,200	
	벽 마감 고급화	거실 아트월	J/복도 유럽산 대형 세라믹 타일 + 복도 벽 특화	마감 19,131,00	0 1,913,100	1,913,100	15,304,800	
	주방 고급화	특화 +	ru 타일 + 주방 가구 특화(유리플랩장 외 상/하부장 조명 외) + 주방 라인조명 + 수 리 특화 + 전해수 살균 수전 + 독립형 후도	펀, 9,304,000	930,400	930,400	7,443,200	HL-31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등	빌트인 냉정	· 	가구 6,247,000	624,700	624,700	4,997,600	발코니 비확장형
	드레스룸 고급화	(※ ⊑ā	침실1/침실2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베스룸 + 파우더 통합, 욕실 도어 위치 변경	10,417,00	0 1,041,700	1,041,700	8,333,600	선택 불가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삼성)	980,000	98,000	98,000	784,000	
	빌트인 스마트 제습기	빌트인 스미	·트 제습기(힘펠) 2개소	2,808,000	280,800	280,800	2,246,400	
	조명 고급화		일 간접조명(우물천장) + 거실/주방/침실 병(디밍/색온도 조절, Smart lot 스위치 제공	4,629,000	462,900	462,900	3,703,200	
	3구 인덕션		3구 인덕션(LG)	1,195,000	119,500	119,500	956,000	
	오븐		기능성 오븐(삼성)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미니 월패드		현관 미니 월패드(현대HT)	508,000	50,800	50,800	406,400	
	스마트 욕실 환풍기	스마트 욕설	일 환풍기(힘펠) 3개소	1,149,000	114,900	114,900	919,200	
	현관 중문 3SD f		3SD 현관 중문(수동) + 에어 브러쉬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20 ST		3SD 현관 중문(자동)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부부욕실		타일, 욕조 측면/뒷선반 마감 특화 + 5 세면대/욕조수전/샤워수전, 악세서리 특					
	욕실 고급화	TT72	(※ 욕실 고급화 선택 시 부부욕실 입구 타일 연장 시공)	바닥 6,996,000	699,600	699,600	5,596,800	
		공용욕실, 욕실	타일, 뒷선반 마감 특화 + 도기, 세면대/샤워수전, 악세서리 특화					
	바닥 마감 고급화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3,924,000	392,400	392,400	3,139,200	
139B	벽 마감 고급화	거실 아트월	J/복도 유럽산 대형 세라믹 타일 + 복도 벽 특화	마감 20,140,00	0 2,014,000	2,014,000	16,112,000	
1395	주방 고급화		막 타일 + 주방 가구 특화(유리플랩장 외 특화 + 상/하부장 조명 외) + 주방 접조명/라인조명 + 수전, 악세서리 특화 + 살균 수전 + 독립형 후드	11.880.00	0 1,188,000	1,188,000	9,504,000	발코니
	주방 장식장, 현관/주방 통합 팬트리	주방 장식장	+ 현관/주방 팬트리 통합 및 시스템가구	고급화 3,936,000	393,600	393,600	3,148,800	의 기환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등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수납 시스템 가구		가구 6,511,000	651,100	651,100	5,208,800		
	드레스룸 고급화	(※ ⊑ā	침실1/침실2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베스룸 + 파우더 통합, 욕실 도어 위치 변경	9,827,000	982,700	982,700	7,861,60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삼성)	980,000	98,000	98,000	784,000	

빌트인 스마트 제습기	빌트인 스마트 제습기(힘펠)	2개소	2,808,000	280,800	280,800	2,246,400	
조명 고급화	거실 간접조명(우물천장) + 거실/주방/침실 특화조명(디밍/색온도 조절, Smart lot 스위치 제공)		4,585,000	458,500	458,500	3,668,000	
3구 인덕션	3구 인	덕션(LG)	1,195,000	119,500	119,500	956,000	
오븐	기능성 9	2븐(삼성)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미니 월패드	현관 미니 월	현관 미니 월패드(현대HT)		50,800	50,800	406,400	
스마트 욕실 환풍기	스마트 욕실 환풍기(힘펠)	3개소	1,149,000	114,900	114,900	919,200	

4) 선택품목 계약관련 유의사항

-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은 세대의 설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니 공고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는 본공사 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옵션은 시공 상의 문제로 추가계약 등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관통 슬리브가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 브러쉬는 현관 중문(수동) 선택 시에만 제공되며 제품의 외형 및 자재 사양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현관에 에어 브러쉬 선택 시 신발장 내 가구 디자인이 변경되며 필터 및 집진봉투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3구 인덕션 옵션 금액은 가스배관 등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비용이 적용된 금액입니다.(가스계량기 위치: 다용도실)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IAD 그미 O 웹	491001-01-360296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납부계좌(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신영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선택품목 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

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 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KB국민은행 491001-01-360296, 신영부동산신탁(주)]를 통해 관리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11. 단지 여건 및 설계관련 유의 사항

■ 일반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준공과 연동하여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분양권 전매 시 매수인은 총 공급금액의 10%이상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청약통장을 사용한 분양계약자 제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매도인의 주소에 서면 통지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분양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 (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기본, 확장, 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표기 사항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 설치 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 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가 미러 타입일 경우 본 공사 시 세대 내 가구. 가전 등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전자식 스위치, 미니월패드, 월패드, 주방TV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미니 월패드는 유상옵션 상품이며, 미선택 시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류는 본 공사 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전류의 경우, 본 공사 시 사용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문주, 탑라이트,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 공개공지,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생활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용 실외기 실, 자전거 보관대, 포장패턴 및 재료, 보행자용출입구, 램프계획, 주변 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 시 확인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제 시공 시 제품의 품귀, 품절 등 사항으로 인해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 및 관계법규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표저, 바닥배수구, 선혹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극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 공됩니다.(이 경우 매수인에게 통보한다.)
-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주택형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 및 옵션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통합분전반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TV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다용도실 바닥 단차는 본 시공 시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인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학교 배정

- 본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곤지암초등학교, 중학생은 곤지암중학교로 배정 예정입니다.

■ 단지 계획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VII-0.204a 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공간활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이후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의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일조환경분석결과 일부동(105동 56.7%, 106동 52.9%)의 수인한도 만족비율이 60%미만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및「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경사지, 야산, 묘지 및 농가 등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에는 고가철도(경강선), 저층주택, 농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당 사업지 대지경계 외부에 대한 사항은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가 변 경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상 단지 남측에는 준주거용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 단지 서측에는 노외 주차장, 소공원 및 경관녹지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이 조성예정이나 당 사업지의 준공 및 입주 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남측. 서측. 북측. 동측의 도로와 인접한 단지 내 옹벽 높이와 설치범위. 조경시설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7,108,109,110동의 경우 북측 단지 내 도로 및 단지외부 8m도로의 레벨이 높아 조경석 및 토목옹벽(1~5m 높이) 등이 해당 동 후면에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분진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경석 및 토목옹벽의 높이, 형태,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경관조명 및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 1층 동출입구 별로 각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경관조명계획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분양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계획은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 또는 현장 여건에 따른 구조검토내용에 따라 위치,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106, 107, 108, 109동의 저층 세대는 문주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조망권 침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추후 조경 계획 변경 및 동선 계획 변경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DA, 탑라이트 등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지에 대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문주 조명 및 차량 경광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빛 공해 및 소음으로 인해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의 형태, 규모, 디자인 등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지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반영하여 아파트용 2개소,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가 각각 설치되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비상 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옥외계단이 단지 서측 및 남측에 설치되며 출입통제장치가 없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101동, 102동, 104동에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설치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 층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동들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남측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이 별도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주동의 세대에는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현휘, 매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지하1층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지하2층의 유효높이 2.3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입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교통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개 층 필로티 상부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발코니에 설치되어 비상 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되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각 주동 1층에는 부대시설(101동-공유오피스, 독서실,102동-힐스라운지, H아이숲,103동-주민회의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105동-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106동-게스트하우스, 경로당, 107동-어린이집, 관리사무소,108동-용역원휴게실, 숙직실)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진동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동 위치에 따라 이용 동선에 불편함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대시설의 위치이동 및 이용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휘트니스센터(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라운지,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전면 데크 하부에 설치되며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 및 외부 E/V, 계단실을 통해 이동 후 이용할 수 있고 주동 위치에 따라 이용 동선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시공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간 설치, 조정,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옥외 주민운동공간이 조성되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107,108,109,110동 인근에 단지 내 레벨차이 극복을 위한 조경석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며,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형태, 규모, 재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시설(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위치는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정 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지하층 일부에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 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용량은 실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동 PIT에는 세대 창고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개수, 사양(크기, 재질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세대별 창고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자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각 주거동의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대지경계 안쪽으로 투시형 휀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각종 홍보물(단지 모형,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행기금 출연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입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분양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분양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사공사가 책임자자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건물 내·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등) 등에 의하여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측벽, 102동 측벽, 103동 측벽 및 코어외벽, 107동 측벽, 110동 북측 및 남측, 기타 주동 필로티 내부)
- 지상 1층에는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Dry Area_급배기타워)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진 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A(Drv Area 급배기타워)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101동, 102동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102동, 103동 인근에 정압기 또는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지하층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 제연휀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 시 인접한 호실은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 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 주차장에는 재활용품보관창고가 계획되어 있어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홈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지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계단실 창호는 최하층 및 최상단 2개층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으로 설치되고. 그 외 층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픽스창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용시설이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변경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각 시설의 실외기실 및 옥상공간(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 시설은 입점자 공사분입니다.)
-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휀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계획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파우더가구 등)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의 가구 계획은 견본주택 건립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기본형 제공품목 및 확장 시 지급품목, 별도 유상 선택 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도서상의 단위세대에 표기된 점선 표현은 가구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으로, 실제 시공되는 부분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합분전반,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분할치수,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발코니 비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발코니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 옆 세대 단열을 위해 발코니 크기가 축소될 수 있고 상부 세대의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위세대평면 설계 시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거실, 침실, 주방 등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 가구 등의 설치가 불가하거나 실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39A, 139B 타입의 경우 최상층에 설치됨에 따라 세대 전후면에 테라스(베란다)가 형성되나 공용공간인 지붕의 일부 구간이므로 유지관리 동선의 제공이 요청될 수 있으며 세대에서 전용화(유지관리 동선 미 제공, 지붕설치 및 배수관 임의 차단 등)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 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139A. 139B)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천장 높이가 견본주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생활습관에 따라 새시.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별도의 보일러실 구획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품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고. 유선 컨트롤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홈l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관통 슬리브가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 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됩니다.
-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는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복도 또는 전용 보일러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는 실외기실에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됨에 따라 장비 및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 디퓨져 사양,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장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환기캠이 외부설치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화장실 천장내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 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 장 설치 또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실(다용도실)은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제조사별 세탁기, 건조기의 사양(폭, 크기, 높이 등)에 따라 병렬로 설치할 경우, 설치가 불가하거나 보일러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실외기실 출입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설치공간의 유효크기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3구 인덕션 옵션 금액은 가스배관 등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비용이 적용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가스계량기 위치: 다용도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된 소방배관, 기계배관 및 덕트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계약 시 필히 확인하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피난구캡이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 사다리 개방 시 부주의에 의해 아래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출입문 방향 및 하부 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 소음 발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및 기기(선훔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주방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실외기실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샤워부스,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139A, 139B타입의 경우 일부 양변기 주변 하부에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조 하부. 샤워실은 난방 미적용, 드레스룸, 팬트리의 시스템 가구쪽은 난방 미적용 될 수 있으며 코일 피치 간격은 거실/침실과 다름)
- 실외기실은 에어컨 배수배관, 냉매배관 및 관통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고,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1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안내

■ 주요 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제01222024-101-0001300호	일금 이천칠백이십육억이천사백일십만원정(₩272,624,1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MI01222024-101-00013009	글 이선물학이압학학이선사학물업인권성(W272,024,100,000)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보증약관 주요 내용

- 1)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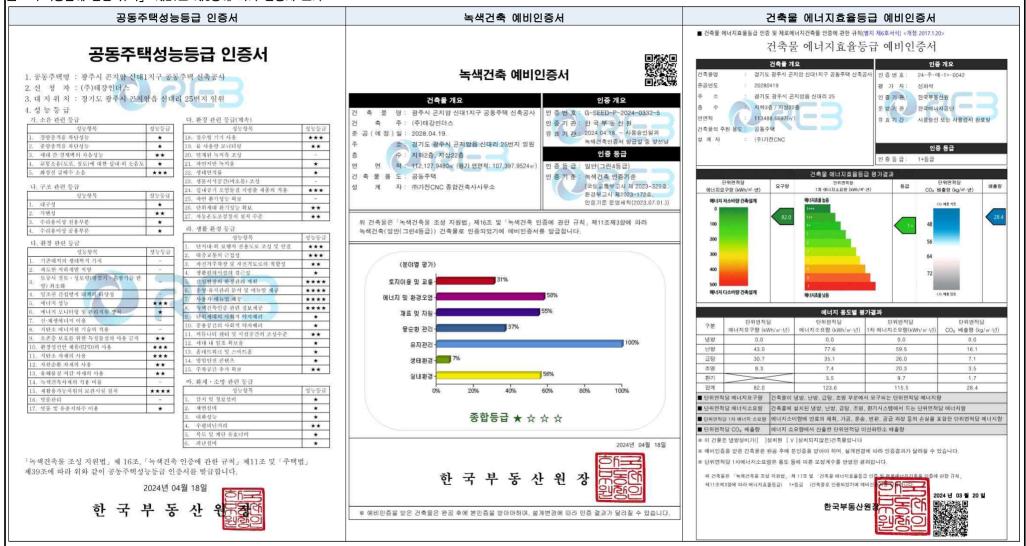
- 3)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분양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13. 기타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제/ 도제26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제7포제2용제2모)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세/ 포세28세0모)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_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 축 감 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삼우공간전	번축사사무소
감 리 금 액	₩3,803,800,000	₩556,842,000	₩101,244,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1101 7 =11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	110111-71268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사업주체	위탁자	㈜태강인더스	170111-072068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73, 2층 B호
시공	응회사	현대엔지니어링㈜	110111-2153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신영부동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99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소유권 이전형태: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2023-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관리형토지신탁

-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주)태강인더스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간에 2023년 11월 30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합니다.
-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 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가 부담한다.
-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7.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hillstate-hec.co.kr/s/gonjiam-station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
- 분양문의 : 1551 063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도(견본주택)

